

2024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CONTENTS

I. 완주특수교육의 기저	1
1. 전북 교육의 기본 방향	3
2. 전북 특수교육 비전 및 목표	4
3. 완주교육의 기본 방향	5
4. 완주특수교육의 기본 방향	6
II. 완주특수교육 현황	7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9
2.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11
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11
III. 완주특수교육 운영 계획	13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5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3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3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55
IV.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57
1.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	59
2. 2023학년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	63

CONTENTS

V.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69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71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72
3. 통합교육 및 순회교육 지원	75
4.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활동 지원	78
5. 특수교육 연수 운영	81
6.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82
7. 학부모 및 가족지원	84
8.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85
9. 특수교육 상담 및 홍보	89
VI. 부록	91
1. 완주 관내 특수학급 현황	93
2. 2024 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업무	96



I

완주특수교육의 기저





비 전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목 표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추진 과제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 특수학교(급) 다양화 및 특성화
- ▶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 확대
- ▶ 맞춤형 디지털 교육확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지원강화
- ▶ 관계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교육비전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완주교육



완주교육 비전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완주교육



완주 특수교육 중점과제

- ①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②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③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④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II

완주특수교육 현황



[기준일 2024.3.1.]

가.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급별	학교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생 계
		학교 수	특수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유치원	5	6	17	2	2	3	22	
초등학교	22	23	75	19	4	5	99	
중학교	8	9	28	3	2	5	36	
고등학교	4	5	24	3			27	
계	39	43	143	28	7	13	184	

※ 2024학년도 삼봉유치원, 삼례초병설유치원, 소양초, 청완초, 화산중 특수학급 신설

나. 일반학교 학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특수학급	4	3	9	6	18	16	17	8	11	8	14	6	7	11	5	143
일반학급	2	1	3	6	2	5	2	4	4	5	1	2	3		1	41
계	6	4	12	12	20	21	19	12	15	13	15	8	10	11	6	184
	22			99						36			27			

※ 초등학교 취학유예(3)

다. 일반학교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발달 지체	건강 장애	계
유치원			2						20		22
특수학급			2						14		16
일반학급									6		6
초등학교		1	32	9		19	8		29	1	99
특수학급		1	28	3		16	6		21		75
일반학급			4	6		3	2		8	1	24
중학교		1	24	3	1	5	2				36
특수학급		1	20	1	1	4	1				28
일반학급			4	2		1	1				8
고등학교		1	23	1		2					27
특수학급			20	1		2					23
일반학급		1	3								4
계		3 (1.6)	81 (44%)	13 (7%)	1 (0.5%)	26 (14.1%)	10 (5.4%)		49 (26.6%)	1 (0.5%)	184

라.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전북 푸른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순회급	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전공 1	전공 2		
학급 수	1	1	1	1	1	2	3	2	1	2	2	2	1	1	1	22
학생 수	6	6	6	6	6	13	16	9	6	11	11	12	9	6	4	127
	43						31			34			15		4	

2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계	비고
특수교육지도사	3	6	1	2	17	29	
	봉동유치원(2) 삼봉유치원	간중초, 삼례동초 삼례중앙초, 이성초 청명초, 태봉초	삼례중	고산고 완주고	푸른학교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2	3	2	1	4	12	
	봉동유치원	봉서초(2), 삼우초 송광초	소양중 삼례중	완주고	푸른학교		

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

센터장 (교육장)	부센터장 (교육지원과장)	담당 장학사	교사	운영강사	특수행정 실무사	계
1	1	1	5	1	1	10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위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시설			비고
	실명	수	면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완주교육지원청 별관 1층	사무실	1	70.70㎡	특수교육관련 업무처리, 상담
	모듬활동실	1	53.67㎡	영유아교육, 문화·체육활동 미래교육(실감형콘텐츠-예정)
	자료실	1	29.26㎡	특수교육지원센터 물품보관, 대여
	직업교육1실	1	55.00㎡	일상생활훈련 및 공예활동, 미래교육 (스마트기기활용 교육-예정)
	직업교육2실	1	70.00㎡	제과제빵 및 요리활동
	진단평가실	1	16.44㎡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카페테리아	1	56.4㎡	완주교육지원청 시설 활용 바리스타 직무교육



III

완주특수교육 운영 계획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내실화

추진목적

-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맞춤형 지원에 대한 연속적·종합적 접근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추진내용

- ①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연계 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체계 강화
 - 대상: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장애 진단 받을 개연성이 또래보다 높은 영유아
 - 내용: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 방법: 지역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연계, 지역교육청 진단평가위원회와 협의 등
 - 지원: 진단평가비 지원
 -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기관 연계 및 특수교육 적극 홍보
 - ‘학부모 On누리 및 지역(전북) 학부모지원센터’와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온맘(국립특수교육원)’ 이용 안내
- ② 장애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확대
 - 재택(가정, 시설, 병원 등)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영아의 가족지원 실시
 - ※ 학기 중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관련서비스 제공
 - ※ 특수교육대상영아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 지원 가능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20.8.7.)
 - 발달단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보급

-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육아정보센터와 협조를 통하여 장애영유아 담당 교원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조기 지원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 참고 】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콘텐츠



현장 중심 통합교육(유치원, 11차시)

-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선정, 놀이특성, 협력 교수, 부모 상담 방법,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8차시)

-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놀이, 놀이 관찰과 기록, 놀이를 통한 장애공감문화 형성, 협력교수 운영, 중도중복장애유아의 놀이 등

-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 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모상담 및 초등학교 방문 등 입학 전/초기 프로그램 운영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 참고자료: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길라잡이(경남교육청,2017)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활동지원 자료(국립특수교육원,2022)

지원 및 협조사항

-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취학 절차 등에 대한 적극 홍보**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령기 의무교육 이행 독려**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면제는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취학유예 시 재취학 시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보류
- ✔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입학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25. 1.)
-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24. 11.)**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추진목적

- ◆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추진내용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선정·배치, 취학의무 유예·면제 및 재취학, 유예기간 연장, 특수교육대상학생 재선정 등 심의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전문화**
 -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구성: 업무담당 장학사(팀장), 특수교사, 상담교사, 치료지원 전문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사,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 역할: 진단평가 관련 보호자 상담 및 검사, 결과해석 및 제언 등
 - 계획: 매년 초 진단평가팀 구성 및 진단평가 운영계획 수립
 -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
 - 선정·배치 절차, 관내 특수교육기관 정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가족 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면담·관찰 및 보호자 상담 등을 통해 교육적 진단 실시
 - 진단평가 담당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지원
 -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 **지역 여건을 고려한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중점 사업 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 업무 관련 필수 영역(진단·평가, 행동중재, 미래교육, 교육과정 등) 연수 이수 및 외부 전문가 연계 교육, 선진지 시찰 및 워크숍 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사회 관계기관 연계 강화**
 - 지역 내 유관기관(의료·교육·보육·직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지원과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 교육지원청 내 WEE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부서 간 업무 협력 강화
 -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상시 지원 기반 마련
 - * 행동중재,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3 특수학급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목적

- ◆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21조(통합교육)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교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추진내용

☑️ 특수학교(급) 확충

-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축소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학급당 정원 수 준수

연도	유	초	중	고	전공과	비고
2024	4	6	6	7	9	전공과는 전라북도 자체 정원임

- 완주 관내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현황

연도	유	초	중	고	비고
2023		태봉초(신) 삼례중앙초(증) 동상초(폐)	화산중(폐)		
2024	삼봉유치원(신) 삼례초병설유치원(신)	소양초(신) 청완초(신)	화산중(신)	완주고(증)	

☑️ 특수학급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 기준(급당 기본 350만원, 학생 1인당 50만원 이상 추가 편성)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225쪽 참고

지원 및 협조사항

- ✔ 2025학년도 학급 수용 계획(2024년 11월) 수립
 - 2025학년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9월 실시 예정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 유치원 유아 모집 시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우선 모집 대상임
 - 우선 배치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 ✔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전라북도교육청)
 - 신·증설 특수학교 시설 정비 및 교재교구 지원
 - 노후 된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연차적 지원(추후 공문 안내)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
 - 시·군을 달리하는 학교 배치는 지양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배치는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운영할 학교 중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2항)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4 특수교육 교원역량 강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 ◆ 특수교육교원 연수 확대 등 전문성 신장으로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제5호,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추진내용

①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

-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조직·운영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연구하는 학교문화 조성
 - 유·초·중등 학교급별 특수교사 교육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지원
-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 담당 교원, 통합교육 담당 교원 연수 및 협의회 실시
 - 2022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관련 연수
 - 특수교육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정 및 디지털 활용 연수
 -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및 통합교육 관련 연수

②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등 전북 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 프로그램 적극 활용
 - 개인 상담 및 진료, 학교 단위 교원치유, 교원 맞춤형 치유, 숙박형 휴 프로그램 등 교원치유프로그램 적극 활용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교권보호배상책임) 운영
 - 법률지원단 및 교원치유 전문상담(가)기관 및 병(의)원 활용(85개 기관)
- 특수교육 교원의 회복 탄력성 향상
 - 특수교육 교원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연수 운영
 - 특수학급 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및 협조사항

☑ 특수교사 연구회 적극 참여 협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 전문적 학습공동체)

순	구분	영역	수	내용
1	연구회	정보화, 교육과정 행동중재	3	- 전문화와 일반화를 위한 전문 연구회 운영
2	교사 연구회	특수교육 수업개선	10	- 장애영역별 교육, 교과교육, 예술교육, 범교과교육(환경교육 등) 수업개선 연구 활동 - 에듀테크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연구
3		진로직업	10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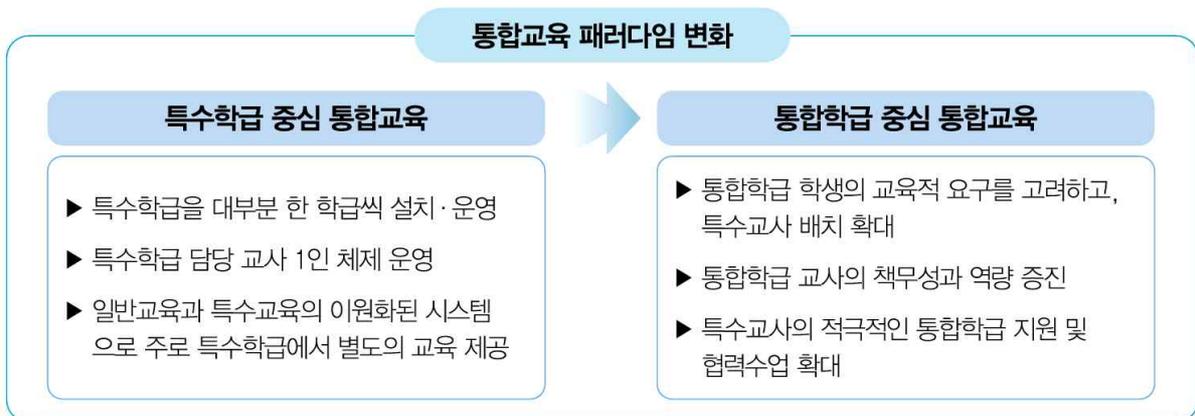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내실화 도모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추진내용

①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이행사항 점검 체계 마련
 - 모든 사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 마련
-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권장
 -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3명 감축 권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 일반학교 통합학급 적응 기간 운영 지원
 - 학급구성원으로서 일반학급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응 기간 운영
 - 학생 특성과 특수학급 상황, 통합학급 교사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운영 권장
-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교육 인력풀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 대학 등과 상시 협조 체제 및 협의체 운영
 - 지역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역할 〉

- ◆ (위원) 지역 내 인력풀을 활용하여 특수교육 전문가*로 위원 구성
 - * 대학 교수, 특수교육 수석교사·고경력 교사(10년 이상),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 전문가, 학부모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
- ◆ (역할)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신규 특수교사 지원, 신·증설 특수학급 및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대상 컨설팅 지원 등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진단·평가,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학습·정보 지원 기능과 연계

☑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초·중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참고 】 ‘학교장애인식지수’ 기본 구성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각 5종(예정) ‘상황기반 장애인식 척도’		
구성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교사용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4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정서, 실천 • (문항) 7가지 상황 41문항	• (지표) 관점, 지식, 실천 • (문항) 6가지 상황 35문항

※ 출처 : 교육부(2021). 학교장애인식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정책연구.

지원 및 협조사항

-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권장
- ☑ 통합학교(초·중·고)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안내 및 참여
- ☑ 일반학교 통합학급 적용 기간 운영 권장
 - 장애 특성 및 특수학급 상황 등을 고려, 통합교사와의 협의
- ☑ 완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참여
 - 학교의 요청에 따라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 관내 특수학급 미설치교 현황(2024년 3월 예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용봉초병설유치원 별숲유치원	동양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용진초등학교	삼우중학교 봉서중학교		8개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2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 ◆ 교원의 통합교육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역량 강화
-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일반교육 교원과 특수교육 교원의 협력체계 강화로 통합교육 활성화 도모

-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제21조(통합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 ▲ 국정과제 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추진내용

①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사 연수강화

- (일반학교 교(원)장)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근거: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9-179호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 지원대상학생과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특수학급 교사) 학교 과정별·장애 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②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 단위 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 및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 교육과정의 재구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학습보조기기지원, 교원연수 등

< (참고) 통합교육 협력 관련 자료 >

-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 ◆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사례 콘텐츠(에듀넷 티클리어, 에듀에이블)

○ 일반·특수교사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방안 연구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참고: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모델 개발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19)

-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
 - 신·증설 유치원 특수학급 컨설팅과 교재·교구 지원 강화
 - 유치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수업연구 활동 지원

〈 (참고) 유치원 통합교육 관련 자료 〉

- ◆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 (교육부·전북교육청, 2017)
- ◆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국립특수교육원, 2018)
- ◆ 유치원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21)
-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유아용) (국립특수교육원, 2021)
- ◆ 장애유아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국립특수교육원, 2022)

지원 및 협조사항

- ✔ 일반학교 교(원)장 대상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
- ✔ 완주 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시 통합교육 담당교원 적극 참여 안내
- ✔ 통합교육 관련 연구 자료, '정다운학교' 운영 계획 및 우수사례 활용 안내('24.3.)
 - 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 > 연구학교
 - 에듀에이블(eduable) > 통합교육
-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 신청
 - 통합교육 활동 운영비 지원(1급당 1,000천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00학급)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추진목적

◆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통한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 등). 제56조의 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신고 의무와 절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추진내용

①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범교과 학습 인권교육과 통합한 계기교육 및 장애이해수업 연계 지원
 -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 확대 운영
 - * 유(유아용 3D 애니메이션), 초(대한민국 1교시), 중고(장애이해교육 드라마)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반영한 유·초·중·고 연간교육계획 수립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장애공감교육)' 운영
-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 강화

②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전 직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 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 변경 사항: 2023학년도부터 대면을 통한 교육 최소 1회 이상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신고의무와 절차]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 전 직원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원격교육
 - 이수 시간: 매년 1시간 이상

○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교 공개의 날 등에서 전문 강사, 우수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교육 실시

* 전북 학부모지원센터 연계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공감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에듀에이블-장애공감)

지원 및 협조사항

- ✔ 각급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 장애이해교육 시 장애인교원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 ※ 교육부-함께하는 장애인교원 노동조합 단체 협약 제34조
- ✔ 각급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시행
- ✔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공모전(2024.6. 예정) 및 국립특수교육원 제2회 전국 장애공감포스터 공모전 참여

참고 자료 1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관련 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
교육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고용 확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교육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의 모든 직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및 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모든 직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모든 직원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종)
교육 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자율적 운영 → 직군이나 인원, 규모 상관없이 대면교육 1회 이상 실시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자율적 운영 (원격교육 수강 사이트 별도 안내)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 자율적 운영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교육 실적제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23년 12월 전수조사 예정 (업무관리시스템)	23년 12월 전수조사 예정 (업무관리시스템)
교육 미이행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시행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식개선 관련 의무교육 Q&A

Q.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교육대상이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체 근로자가 교육대상으로 근거 법령, 교육 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면서 동시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인 어린이집 직원과 유·초·중·고·대학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교육공무직,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각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호인정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두 교육을 상호인정한다고 간주한다는 부칙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으로 제작, 보급하고 있는 통합인식개선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상호인정 가능함)

Q. 학교입니다. 대면 교육을 학생, 교직원, 기관장 모두가 1회씩 필수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직군이나 인원 규모 상관없이, 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대면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즉, 학생에게만 대면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되고, 교직원에게만 대면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도 됩니다. 모든 직군에게(모든 교육 대상자에게) 대면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도 하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기관에서 소규모 또는 적정 인원으로 대면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23.3.)」, 「2023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안내(23.4.)」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
법정의무교육 인정 원격연수 안내

누리집	구분	과정명	
전북교육 연수포털 (23년 기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교원 의무연수 과정 II	총 21차시 (709분)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포함) 의무연수 과정 II	총 37차시 (18시간 4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2차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1차시
중앙교육 연수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상호인정)	[통합교육콘텐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3 장애학생 인권 강화

추진목적

- ◆ 장애학생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3항, 제13조(특수교육실태조사)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추진내용

☑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고 및 제보 시스템으로 국립특수교육원과 공동 운영
-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조사* 매년 실시

< (참고)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개요 >

- ◆ (목적) 장애학생 인권침해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응 지원
- ◆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 (내용) 2023년 2학기부터 2024년 1학기 동안 학교생활 내 인권침해 경험 및 인식 등
 - ※ 조사표는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3개 영역)로 구성
-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 ~ 전공과) 및 보호자, 교원
- ◆ (시행) 17개 시도교육감(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 완주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지원 내실화
 -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실시, 장애학생 및 교사상담 실시
 -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시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
 - * 경찰서, 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아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 함양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일반학교(원)장 및 교사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 국립특수교육원 “NEW! 장애학생의 인권교육과 성교육 등” 원격연수 활용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지원 및 협조사항

- ✔ 장애학생 중대사안 발생 인지 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 피·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모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 각급 학교에서 장애 학생 대상 학대 및 성범죄 발생 시 기관장 또는 교직원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및 성교육 실시(매 학기 1회 이상)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연 1회) 적극 협조 및 안내
-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 교육부 고시 제2015-3호(교육부 고시 제2022-3호 일부개정 포함)

추진내용

- ☑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 활용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교육부고시 제2022호-34)
 - * 초·등 교육과정 개정 추진과 연계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동시 개정 추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시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2024. 2.)

-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 (참고) 2024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관련 연수 〉

- ◆ 고교학점제 이해
- ◆ 일상생활 활동 교과용도서 활용
- ◆ 특수교사 발명교육
- ◆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
-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 ◆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등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구분		작성 방법
통합학급에서 교과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는 교과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작성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교과편성 시간을 나누어 참여하는 교과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시 특수학급 참여 시간의 교육활동 및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가능
특수학급에서 교과 편성시간 전체를 참여하는 교과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 내용이 있을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특수교사에게 교과의 지도계획 및 평가 계획을 제공하고,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교육 내용 및 평가내용을 교과 담당교사와 공유 ○교과 담당교사는 공유 내용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이 어려울 경우	○장애가 심하여 교과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생활기능 중심의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가능한 태도, 노력, 성장 등의 내용을 기재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절차(p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록 가능 <i>예) 개별교육에 따라 특기사항 없음</i>

※ 참고: 교육부(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장애학생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도움 자료)

지원 및 협조사항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및 연구회 적극 참여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추진목적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추진내용

☑ 특수학급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구분	내용	시기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지원 	3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14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통합학급교사, 학부모 참여(의무)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3월
개별화교육계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학기말

☑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 학생의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활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 참고: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을 및 운영지원 자료 개발 연구(국립특수교육원, 2022)」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방안 모색

※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 개선 요망('19.10.23.,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및 협조사항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과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 통합교육지원단을 활용한 컨설팅 실시

- 관련 문의: 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70-7606)

✔ 일반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시 일반교원의 참여와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보호자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 준수

✔ 위기행동에 대한 체계적 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개별 학생 행동 중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에 포함

※ 문제행동 중재가 필요한 모든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과 교사의 안전 및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체계적 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참고 자료 3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 자료 ■

개별화교육계획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및 개별화교육시작 및 종결 시기

이름		개별화교육지원팀	1학기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팀장(교감)	
학년반	학년 반	팀원(보호자)	
특수교육대상자 유형		팀원(진로담당)	
배치결과통지서 번호		팀원(일반교사)	
주소		팀원(특수업무)	
		팀원(관련서비스)	
배치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학급 배치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급 배치		
1학기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	1학기	2024.03.01 ~ 2024.08.○○	

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1학기
치료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3.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현재학습 수행수준	
-----------	--

4.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영역	1학기
교육 목표	(예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모든 교육과정 활동에서 교육 목표·내용·방법 및 평가 계획의 수정 없이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3 순회교육 지원강화

추진목적

- ◆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 요구 등에 대한 진단·평가 및 적절한 교육 지원으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제25조(순회교육)

추진내용

☑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실시
 - 재택(가정 및 시설 등)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안내
 - ※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 심의 결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81, '20.7.14.)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
 - 특수학급 설치교에 배치된 학생의 순회교육은 소속 학교의 특수교사가 실시
 - 일반학교 순회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권장

< (참고)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학생 지원 모델 (국립특수교육원, 2019, 재구성)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공통)
교육과정적 지원	협력교수	통합학급 교사의 교수적 수정 지원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 · 담임교사 자문
사회적 관계 지원	또래관계 지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 학생 및 교직원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자원 연계 지원	특수교육대상 조기발견 지원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학생 및 보호자 상담 ·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의 능력,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배치환경* 및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순회교육 운영
 - ※ 재택(가정, 시설, 병원) 순회교육,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 ※ 참고: 전북교육청(2024).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운영 길라잡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추진목적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재능 발굴 및 여가생활 다양화 도모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추진내용

- ①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지원을 통한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회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 향유권 보장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한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방안 마련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 문화체험학습 운영(연 2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②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체력 회복 프로그램,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에서 개발 자료* 활용
 - * 장애·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스포츠(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지원 및 협조사항

- ①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참여 독려
- ②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5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추진목적

◆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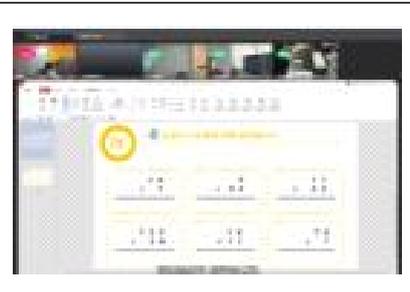
①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특수교육지원센터 미래환경 교실 구축* 및 기자재** 확충
 -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스마트 미래교실(구축 예정)
 - ** AI 학습보조 로봇, 실감형 콘텐츠 체험기기, AI형 스마트 기기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을 위한 미래교육 역량 강화
 -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②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안내

-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운영('22~)
- * 실시간 음성 인식·자막 지원, 개별 화상수업 등 기능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 】

		
(학습관리) 온라인 수업 진도	(오늘학습) 수학 콘텐츠	(화상수업) 음성인식 자막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 ※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www.nise.go.kr)-수업지원자료' 탑재자료 활용

✔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 2024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운영(6월 예정)
 -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지역대회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에듀테크 교실 및 기기 확보를 통해 학생 대상 VR·AR, AI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 제공

지원 및 협조사항

- ✔ 장애학생 e-페스티벌 적극 참여
- ✔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및 관련 동아리(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독려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목적

-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건강장애 등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 ◆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적 지원 및 행동중재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학생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추진내용

-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 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및 안내(2024.3.)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방안 마련
- ✔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 학습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연계 지원
 - (시각장애) 전북맹아학교 / (청각장애)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 * 수어문자통역, 점자확대 교재, 보조공학기기(FM 송수신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지원

✔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지원

- 건강장애학생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보호필요학생 : 건강장애 선정 대상은 아니지만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 병원학교 운영 기관: 전북대학교 한누리병원학교
- 원격수업 수강 학생 지원
 - 운영 기관: 스쿨포유(한국교육개발원), 꿈사랑학교(사단법인 더불어 하나회), 전북e-학습터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소속학교 담임, 특수교사, 원격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 건강장애 선정 시 병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개별 학생의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선(先)교육 지원 가능
- 건강장애 학생 학적 처리, 출결 및 평가
 - (학적 처리)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처리
 - (출결)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 초등은 1일 1시간 이상 중등은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 시,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을 원칙(병원학교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대상자 등 포함)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학교 복귀 지원
 - ※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과 또래를 포함하여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권장 (심리·상담지원, 학교 출석 체험프로그램 등)
- 유의사항
 - 정신질환 학생은 건강장애 선정과 원격수업 수강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안내
- ☑ **행동중재 지원**
 -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학교(급)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구성 및 전문가 인력풀 확보·공유

< (참고) 행동중재지원단 구성 >

- ◆ (구성) 특수교사, 특수교육전문가, 교수, 의사, 행동중재 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학부모 등
- ◆ (역할) 컨설팅, 교사연수, 학부모(가족) 상담 및 교육, 행동중재지원팀 사례 회의 지원, 상황별 진단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가족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 ※ 여건에 따라 별도 구성 또는 통합교육지원단에서 역할 수행 가능

-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지원
 - 지역 내 행동중재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강화

- 학생 개인별 행동 문제에 대해 행동중재전문가, 교육전문직, 특수교육전문가, 전문(의료) 기관 등과 연계하여 행동중재 지원 실행
- 일반학교 교(원)장 및 교사 대상 장애학생 행동특성 및 행동중재 이해 연수 운영
- 가정과의 연계지도 및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연수 운영
- 행동중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지원
 - 특수학교(급) 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
 - 행동중재 연구회 운영 지원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연속성으로 중재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 기관 연계 협력 강화
 -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 정보·상담 제공 및 자녀의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지원 및 협조사항

- ✔ 각급 학교급별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과교육 외에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지원,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행
-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에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참여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7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장애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 활동 참여 도모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추진내용

☑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및 개설
 - * AI, SW, 음악, 미술, 체육 등 특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방과후학교와 일반 방과후학교 중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이나 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 단, 영리기관은 음악, 미술, 체육 영역에 한함

☑ 방과후학교 지원 내용

-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1개 프로그램당 월 60만원 지원(4명 이상, 유치원 3명 이상)
 - ※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
- 교내 방과후학교 및 외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유치원 특수학(교)급 중 방과후 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학급은 학생당 운영비 5만원 이내 지원

[참고] 장애학생 교외 방과후활동 및 돌봄 관련 서비스

부처	서비스	돌봄 등 지원 내용
교육부	자유수강권	예술·체육, 진로·직업교육 등 분야 외부기관 이용권(바우처) 지급
	치료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및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대상 월 44시간(월~토요일 09시~21시)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활동 등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대상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대상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연간 960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언어·청능·음악·미술·행동·심리·감각·운동재활 서비스(바우처) 지원

☑ 방학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협조사항

☑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유아학비(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와 중복 지원 불가

※ 유아학비(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 70천원 지원받을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운영비 월100천원)-(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월70천원)
 = 월의 차액 30천원 추가 지원 가능

- ☑ 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 관리 철저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돌봄 운영 현황 조사 협조(학기별 1회)
- ☑ 집행반납 절차 - 자료 참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반납 시 모두 동일)

집행잔액 반납

- 반납 기준: 지원금 10만원 이상 잔액 발생 시
- 반납 시기: 2025. 2월 중
- 반납 절차
 - . 공립: 에듀파인 교육비 특별회계 징수 → 반납고지서 출력 → 납부(농협)
 - . 사립 고·특수학교: 해당 학교에서 본청 재무과에 납입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농협)
 - . 사립 중: 해당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경리부서에 납입 고지 요청
→ 반납고지서 수령 → 납부(농협)
 - ※ 원단위 반납금지(국고금 관리법 47조에 근거)
- 에듀파인 시스템 반납 처리 절차
 - ① (학교회계) 2024년 회계연도 세입에서 과오납반환결의
 - ② (학교회계)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 조정
 - ③ (교특회계) 수입관리-수입 현황-징수/반환현황-계획 작성-그 외 수입
 - ④ (교특회계) 2024년 교육비 특별회계 그 외 수입 징수결의(학교 대상 여부:아니오)
 - ⑤ (교특회계) 반납고지서 출력 → 납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추진목적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
- ◆ 각급학교의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 보장

추진내용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운영

-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 및 운영

-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해당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안내, 특수교육정책과-4022('18.8.20.))
- 장애학생 1~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 지도에 대해 지원함
- 채용 시 장애인학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조사 등을 통해 자격조건 관리 강화

■ 특수학급 설치학교 : 특수교육지도사를 특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 특수교육지도사를 일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함

○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확대
 - ※ 연수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 규정 등
- 신규 채용 인력 직무연수 30시간 이상 의무 실시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 사회복지무요원의 주요 업무

복무분야	주 업무	부수 업무	복무형태	복무기관
장애학생 활동지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지도, 식사 등 지원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 업무 ※ 부수 임무 수행 조건 - 공익목적 수행범위 - 주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예) 청소, 제설작업, 행사지원 등 ※ 부수 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 부여, 풍속사범 단속	주간	교육청 및 유·초·중·고· 특수학교 (사립포함)

-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지무요원 직무교육(인권교육) 강화

- (신규 요원) 3개월 이내 장애학생 지원 업무 및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연수 16시간 이상 실시

※ 근거: 병역법 제3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지무요원의 복무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기존 요원) 특수교육지원인력 대상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특수교육 보드미’ 운영

- 지원 기간: 2024. 3. 1. ~ 2025. 2. 28.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학교 중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학교
- 지원 인원: 년중 100명 내외(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내)

채용유형	직종별 특성	비고
자원봉사제	- 1일 봉사시간 조정 가능 - 강사 및 근로자의 개념 아님	- 학사일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다양한 연령층의 자원봉사자 참여 가능

☑ 치료지원 내실화

-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지원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필요 학생
- ※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 기관 재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의사 처방 없이 이루어지는 물리·작업치료 및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 지원 불가
- 치료지원 제공시간은 1회당 50분(보호자 상담 포함)으로 하며, 주 1회 제공을 권장함(월 4회)

- 지원 방법: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
 - 개별화교육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 활짝 카드」 사용 안내
 - 카드 신청 및 (재)발급: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신청
 - 이용 방법: 매월 1일 한도금액 생성, 매월 말일 월 잔여한도 자동 소멸
 - 이용 장소: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 치료지원 제공기관의 적절성 평가와 모니터링 철저(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모니터링)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지원 모니터링단 구성
 - 치료지원 대상자의 치료지원 내용, 방법, 발달사항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마련 및 제공
 - 학생 및 보호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기 제공
 - 관련 기기 목록 안내(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공문-예정) 및 상시 대여
-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기기 대여 및 유지·보수 등 서비스 지원
-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이행 철저
 -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3개 의무 항목(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학교 자체 예산 확보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항목 〉

편의 시설 학교급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초/중/고 특수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	-	-	-	-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대책 마련
- 지원 대상
 - 학교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경우
 - 중증장애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위 지원 대상 학생 중 독립적 통학이 어려워 등하교를 동행하는 보호자
- 지원 제외 대상
 - 도보 통학생 및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지로 자가용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경우
 -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단, 월요일과 금요일 등 정규 입·퇴사일 통학비에 한하여 지급하며, 통학비 기준에 따름)

- 사립유치원 의무교육비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유아(의무교육비에 통학비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에서 통학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 취학유예자, 무료통학버스 이용자

〈 완주군 통학교통비 지원 〉

□ 완주군 저소득층자녀 통합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우선돌봄)에 해당하는 가구의 해당 학생

● 신청 방법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을 받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 단, 학생에 대한 변동(학적변동, 전출, 자격변동 등) 시 보호자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금액
고등학생	분기별 지급(3,6,9,12월 하순)	연/1인/432,000원(학생계좌로 지급)

□ 완주군 부름부름 통학택시

● 지원대상: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등교기준: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버스 이용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기준: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 이용요금: 탑승시마다 1,000원 (단, 기초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 : 500원)

● 이용시기: 학기 중 (※ 방학기간과 2월은 운행 안함)

● 이용방법 - 매학기 시작 전 해당학교에서 통학택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기준검토, 선정 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적 유선통보
- 택시기사님과 학생간의 탑승시간 및 장소 협의

● 운행노선

집↔학교 거리	15km 미만	15km 이상
	집↔학교까지 통학택시 운행	집↔버스정류장까지 통학택시 운행

지원 및 협조사항

✔ 특수교육 지원인력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
 - 근무: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임
 - 기존 연봉 체계(일급 단가 및 연봉기준일 수 290일) 폐지, 월급 체제로 전환(14.1.1.)
- 근로시간 준수 철저: 주 근로시간 40시간 준수,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 ※ 1박 2일 이상 숙박형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학생지원 업무를 하지 않도록 주의
- 특수교육 지원인력 행·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
- 사회복지요원 배치·관리 및 교육강화
 - 남학생 지원을 담당하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 발생 예방
 -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
 - 신규 배치 사회복지요원들의 업무 적응을 위한 위탁교육 참여 적극 협조
- 사회복지요원 복무 변동사항 사유(근무지 이동, 신규배치, 소집해제 등) 발생 후 5일 이내 공문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공시 안내(2024.5.)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 제출(2024.10.)

✔ 치료지원 운영 방침 철저 준수

- 치료지원 제공영역 준수 및 치료지원계획서 등 관련 서류 관리 철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추진내용

- 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 해당 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훈련 실시
 -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 ※ 장애학생을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교육부·경남특수교육원), 학교안전정보센터(교육부), 국민안전포털(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참고자료 활용
- ②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급)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 ③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지원 및 협조사항

- ①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및 수업환경 개선 추진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활성화

4-1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지원

추진목적

- ◆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역량 등) 강화
- ◆ 개인의 진로 희망에 따른 사회 참여 기회(진학, 취업 등) 확대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추진내용

- ① 지역사회 기반 활용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고등학교)
 - ‘꿈길(<https://www.ggoomgil.go.kr/gadmin>)’ 활용한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 지역사회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 직업기능 강화를 위한 진로체험 활동 지원
 -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주관: 경남, 10월 예정)
 - 특수교육 교육활동 알림 장터 운영(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상반기 예정)
- ② 특수교육대상학생 특화 진로·직업 교육과정 지원
 - 학교(급)간 연계 진로교육 활성화
 -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등과 연계 운영
- ③ 다양한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체험 기회 확대
- ④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생 진로 역량의 체계적 관리
 - 지속적인 진로 평가 등을 활용한 학생의 직업능력 현황 관리

지원 및 협조사항

-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로직업프로그램 참여
-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24.2~3)
-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 진로 및 직업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 장애학생 진로·직업 이력 관리를 위한 나이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활용 안내(24.3. 예정)
- ✔ 진로직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실기 종목 발굴 및 자격증 취득 운영('24.3.~12.)



IV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가. 운영 목적

- ✔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및 정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보장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로 교육력 제고
- ✔ 특역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체제 강화

나. 운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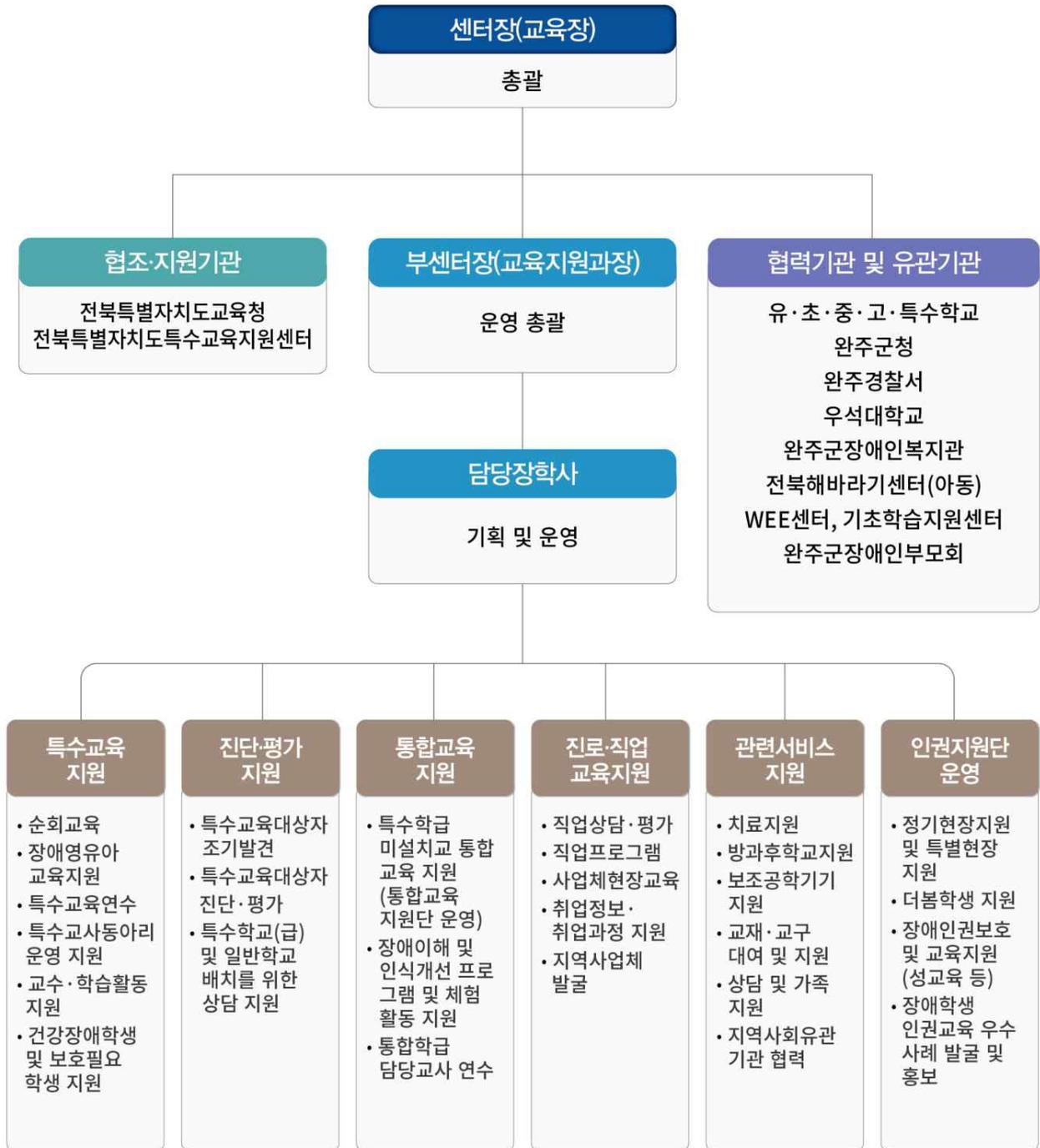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2024년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전북특수교육 2024-028)
- ✔ 2024년 전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전북특수교육 2024-093)

다. 운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역할과 기능을 수행
-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장이 센터장으로 통할하고, 교육지원과장은 부센터장,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는 업무 담당자로 센터를 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진단평가실, 진로·직업교육실, 교육활동실, 사무실 등을 설치
- ✔ 지역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 지역 내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내실화
-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 회의, 역량강화연수, 우수사례 공유회, 워크숍 등을 실시
- ✔ 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하여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운영 계획에 반영

- ☑️ 특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운영체계를 구축
- ☑️ 특이 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2024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4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2024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주요 사업별 운영계획 및 업무 길라잡이 등에 따라 운영

라. 조직 및 업무



마. 업무 분장

담당자	담당 업무
센터장 (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총괄
부센터장 (교육지원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업무 총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장학사 ☎ 270-7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예산 기획 총괄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등) ○ 특수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지요원, 보드미) 배치 및 인건비 ○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체험학습 대상자 선발
유아특수교사 (팀장) ☎ 270-7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예산 운영 전반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요구 자료 작성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정기현장지원, 성교육, 인권실태조사 등) ○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관련 업무(홍보, 무상교육비 등) ○ 유아특수교사 교육학습공동체(동아리)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실 관리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중등특수교사 ☎ 270-7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예·결산 업무 ○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요구 자료 작성 지원 ○ 진로·직업 교육 관련 업무 전반 (교육, 직업교육실 관리, 협력기관 구축, 진로직업거점센터) ○ 중등 진로직업 현장체험학습 운영 ○ 순회교육 업무 및 운영 지원 ○ 특수교육 통계·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작성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초등특수교사 ☎ 270-76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급 정보관리 ○ 치료지원 전반, 치료지원비 지원(꿈활짝카드) ○ 치료지원 모니터링팀 운영(치료지원 유관기관 점검·모니터링) ○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의료적 지원 등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담당자	담당 업무
<p>초등특수교사 ☎ 270-76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교육 (교육, 기자재 관리 등) ○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유·초등 교육과정 지원 (찾아가는 교육지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 ○ 찾아가는 장애공감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특수교사 교육학습공동체(동아리)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지원(신증설·노후화 개선, 통합교육프로그램, 자율선택과제 등)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p>중등특수교사 ☎ 270-76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연수 운영 전반 (특수교사, 통합교사, 학부모,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태조사 등)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행동중재 지원(행동중재지원단, 컨설팅 등) ○ 중등특수교사 교육학습공동체(동아리)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교육관리) ○ 진단·평가 및 순회·통합교육 지원
<p>초등특수운영강사 ☎ 270-76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 중 프로그램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가족캠프)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교육 및 동아리 운영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감각장애학생 지원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연계 업무 ○ 진단·평가 및 통합교육 지원
<p>특수행정실무사 ☎ 270-76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 업무 지원 (자료 취합, 문서 작성지원,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여비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정보 제공 ○ 특수교육 홍보 및 보도자료 제작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재교구 및 비품 관리 ○ 특수교육지원센터 물품 구입 ○ 주간업무 취합 및 제출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1	2023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안내 및 관내 교사 협의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2.23.(목) 14:00~16:30 ○ 대상: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업무 담당교사 34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2층 세미나실 ○ 내용: 2023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설명 및 협의
2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특별지원 및 협의회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3월~2024.1월 ○ 대상: 관내 특수학급·특수학교 더봄 학생 ○ 내용: 장애학생 인권지원 관련 현황 파악 및 인권침해 사안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 지원
3	제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3.22.(수) 15:30~18:0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1실 ○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 중 선정취소 2명, 재배치 4명, 순회교육 대상학생 10명 선정, 사회복지무요원 배치 1명 가결
4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실시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3월~2024.2월 ○ 대상: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0명 ○ 장소: 관내 특수학급 미설치교(7개교) ○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기본학습 및 생활지도, 통합교육 지원
5	상반기 진로직업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내 일!(My Job!)”	진로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4월~7월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118명 ○ 장소: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급 ○ 내용: 제과제빵, 도예, 종이토퍼, 외식서비스
6	유·초등 너나우리 감수성교육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4.3.(월)~7.25.(화) ○ 대상: 유·초등학교 특수학급(26학급, 81명) ○ 장소: 각급학교, 거점학교 ○ 내용: 미술(13급,44명), 음악(13급,37명)
7	문화예술 동아리 “더디가도 함께 가요”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4월~12월 매주 월·목 14:30~16:30 ○ 대상: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 ○ 장소: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완주중), 꿈꾸는도화지 ○ 내용: 난타, 도예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8	체육 동아리 “더디가도 함께 가요”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4월~12월 화·목·금 14:30~16:30 ○ 대상: 초·중 특수교육대상학생 18명 ○ 장소: 헬로키즈풀, 연두테니스 ○ 내용: 수영, 테니스
9	학부모 동아리 “아동헤어커트”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4월~11월 매주 수 10:00~12:00 ○ 장소: 메이크뷰티 아카데미 ○ 대상: 특수학급 학생 학부모(18명) ○ 내용: 아동헤어커트과정 실무
10	중등 특수교사 교육학습공동체 운영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4.13.~12.7.(총 8회기) ○ 장소: 완주중학교 외 7개교 ○ 대상: 관내 중등 특수교사 11명 ○ 내용: 진로·직업교육 관련 수업 나눔 및 특수학급 운영 방안 연구
11	제1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4.20.(목) 14:30~17:20 ○ 대상: 관내 통합교육 담당 교사 37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그림책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예술활동
12	제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5.9.(화) 15:30~18:3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1실 ○ 내용: 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재진단·평가 포함) 22명 중 선정·배치 10명, 재선정 12명
13	유·초등 특수학급 연합 현장체험학습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6.1.(목) 08:40~16:30 ○ 대상: 유·초등 특수학급 소속교(16교, 81명) ○ 장소: 국립광주과학관 ○ 내용: 과학관 시설 관람 및 미래생활 체험 등
14	제1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5.16.(화), 5.30.(화) 14:30~16:40 ○ 대상: 관내 특수교사 32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코딩으로 장애학생 미래교육 디자인하기
15	상반기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5.18.(목) ○ 대상: 치료지원 모니터링팀 ○ 장소: 관내 치료지원 제공기관 2곳 ○ 내용: 치료지원 기본요건 및 현황 등 점검
16	1학기 찾아가는 장애공감교육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5.22.(월)~5.31.(수) ○ 대상: 특수학급 미설치교(3개교), 특수학급 설치교(6개교) ○ 장소: 신청학교 통합학급 교실 및 강당 ○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교육(400명)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17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장애학생 성교육 연수(1차)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6.13.(화) 10:00~16:30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및 특수교육보건 교사 54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세미나실 ○ 내용: 포괄적 성교육 개념, 장애학생의 성 바로알기
18	완주 특수학급 스마트e챌린지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7.3.(월) 09:30~13:30 ○ 대상: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교(6교, 20명)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모둠활동실, 직업교육실 ○ 내용: 미래교육 챌린지, 한컴타자/카트라이더 대회
19	제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7.10.(월) 15:00~18:5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1실 ○ 내용: 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재진단·평가 포함) 23명 중 선정·배치 6명, 재선정 8명
20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8.28.(월)~12.14.(목)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124명 ○ 장소: 초·중·고 특수학급 30교 32학급 ○ 내용: 올바른 성인권 및 경계존중 예방 교육 (학급 4회기씩)
21	유·초등 특수학급 스마트 미래교육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9.5.(화)~12.8.(금) ○ 대상: 유·초등 특수학급(23교, 87명) ○ 장소: 각급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 내용: 코딩교구(3종)를 활용한 코딩교육
22	하반기 찾아가는 진로직업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내 일!(My Job!)”	진로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9월.~12월.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134명 ○ 장소: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원예, 코딩, 토탈공예
23	제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9.19.(화) 15:00~18:5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1실 ○ 내용: 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재진단·평가 포함) 25명 중 선정·배치 7명, 재선정 8명, 재배치 16명
24	2학기 찾아가는 장애공감교육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2023.9.21.(목)~10.27.(금) ○ 대상: 특수학급 미설치교(1교), 특수학급 설치교(15교) ○ 장소: 신청학교 통합학급 교실 및 강당 ○ 내용: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체험활동(916명)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25	제2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9.26.(화) 14:20~16:40 ○ 대상: 관내 특수교사 28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4층 전산실 ○ 내용: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4세대 나이스 연수
26	제2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0.17.(화) 14:20~16:40 ○ 대상: 관내 통합교육 담당 교사 26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통합학급에서의 행동중재 및 소통방법
27	2023 장애포용적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1차)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0.18.(수) 18:00~21:00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공동체가 함께 하는 장애공감교육 ○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교육 담당교사
28	특수교육지원센터 “사랑 가득! 행복 두배! 가족캠프”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0.19.(목)~20.(금) ○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12가족 ○ 장소: 고창상하농원 ○ 내용: 가족 체험프로그램, 보이는 라디오
29	제3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0.23.(월) ~ 12.5.(화) 14:30~16:30, 5회기 ○ 대상: 관내 특수교사 35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및 완주떡메마을 ○ 내용: 1) 학령기아동의 진로지도 및 취업 전 기술 2) 완주떡메마을 견학 및 작업실습 3) 일상생활훈련을 돕는 정리수납의 기술
30 4	2023 유치원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모두 다 꽃이야’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0.30.~2023.11.29.(11회기) ○ 대상: 통합교육유치원 원아 ○ 장소: 관내 유치원 4개원 ○ 내용: 원예프로그램을 통한 장애포용적 교육 지원 강화
31	하반기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실시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2.(목)~11.3.(금) ○ 대상: 치료지원 모니터링팀 ○ 장소: 관내 치료지원 제공기관 3곳 ○ 내용: 치료지원 기본요건 및 현황 등 점검
32	중등 특수학급 연합 현장체험학습	진로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6.(월), 11.20.(월) ○ 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11개교 ○ 장소: 고산 창포마을 ○ 내용: 창포 삼푸, 생강청 만들기 등

순	사업명	분야/영역	추진내용
33	제5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8.(수) 15:00~18:0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1실 ○ 내용: 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재진단·평가 포함) 42명 중 선정·배치 7명, 재배치 33명, 재취학 1명
34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장애학생 성교육 연수(2차)	특수교육 지원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9.(목) 10:00~16:30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및 특수교육보건 교사 58명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세미나실 ○ 내용: 포괄적 성교육 개념 및 장애학생의 성 바로알기
35	2023 장애포용적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2차)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1.15.(수) 15:00~18:00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교사 회복탄력성) ○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교육 담당교사
36	2023 장애포용적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3차)	통합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2.1.(금) 15:00~17:00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내용: 유치원 현장에서 바로 쓰는 행동중재 ○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교육 담당교사
37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실시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2.15.(금) 09:20~12:30 ○ 장소: 완주교육지원청 2층 세미나실 ○ 내용: 입학 전 아동의 준비, 부모의 역할, 질의 응답, 입학 꾸러미 제공, 원예프로그램
38	제6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3.12.19.(화) 15:00~18:0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1실 ○ 내용: 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 23명 중 선정·배치 12명, 재배치 및 선정취소 10명, 취학유예 1명
39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1.22.(월)~ 10:00~14:30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17명,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 4팀 ○ 장소: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 내용: 진로직업 및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실감형콘텐츠실 이용
40	제7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4.2.19(월) 15:00~17:00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 1실 ○ 내용: 5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 진단·평가 6명 중 선정·배치 4명, 취학유예 2명



V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WANJU OFFICE OF EDUCATION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지원

운영 방침

- ✔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적절한 진단평가 및 교육진단 실시
-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강화
- ✔ 영유아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장애 영유아 무상교육 및 지원 제도 홍보 강화
- ✔ 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장애 영유아 현황 및 실태 파악

추진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시기
순회교육 지원	미소속,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의 순회교육 지원 ○ 미소속 영유아의 경우 재택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순회교육 제공 	연중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및 선별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리플릿 제작 관내 관계기관 배포 ○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및 선별검사 실시 ○ 장애 영유아 현황 조사 및 관련 상담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 (www.nise.go.kr/onmam) 활용 ○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실비 지원 :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1인당 1회, 25만원 이내) 	연중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동아리 지원 ○ 통합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연중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유아 및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 전 프로그램 운영(부모상담, 방문체험)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12월
장애영아 교육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않는 장애 영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치료지원 제공 ○ 「영유아보육법」제 34조의 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 가능 	연중

운영 방침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조기 발견 및 교육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강화
- 장애(의심)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진단·평가 계획 수립
- 진단·평가팀 구성: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관내 특수교사, 치료전문가 등
- 사전연수 실시: 진단평가의 시행 방법, 결과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연수
- 검사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
- 진단·평가 절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는 시설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군을 달리한 학교 배치는 지양)

☑️ 취학 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진단·평가 도구 관리 및 관내 학급 대여

☑️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 관리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진단평가, 배치, 재배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관리

추진 내용

세부내용	대상	내용	시기
진단평가 위원회 구성	특수교사, 치료사 등	○ 진단평가 계획에 따른 전문위원 위촉 (특수교사, 치료사, 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3월
진단평가 실시	신규 및 재배치 신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 선정·배치(진단평가) 의뢰에 따른 절차 준수 ○ 선정 의뢰 시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실시 ○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재심사 실시 ○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 ○ 진단평가 결과 누적 관리 ○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실시 〈공통〉 -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 기존학생 중 재배치, (취학)유예, 선정취소 〈특별〉 - 만9세 이상 발달지체 선정학생 재진단·평가 - 상급학교 진학 예정 학생(초6, 중3) 중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재진단·평가	4월 6월 8월 11월 25.1월
진단평가 협의회	진단평가 위원회	○ 진단평가 사전/사후 협의회 실시 (진단평가 결과 및 위원 의견서 등 협의)	연중

☑ 2024학년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일정(안)

순	신청기간	진단평가 일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일정	비고
1차	3월 중	2024.4.1.~4.24.	5월 둘째 주	만9세 이상 발달지체 선정 학생 재진단·평가
2차	5월 중	2024.6.3.~6.28	7월 둘째 주	상급학교 진학예정 학생 중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재진단·평가(초6,중3)
3차	7~8월 중	2024.8.1.~8.30.	9월 둘째 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배치 신청(만5세,초6,중3)
4차	10월 중	2024.11.4.~11.29.	12월 둘째 주	신규대상 학생 선정 및 재배치 취학유예 신청 학생 심의
5차	12월 중	2025.1.6.~1.31.	2월 둘째 주	신규대상 학생 선정 및 재배치 취학유예 신청 학생 심의

※ 공문을 통해 세부 일정 안내

지원 및 협조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의 취학유예

-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및 치료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보류
- 취학통지서 또는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배치 학교로 취학유예를 먼저 신청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신청서를 완주교육지원청으로 제출
(1~2월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관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관내 학교로 재배치 문의 시

- 거주지 인근 특수학급(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도록) 안내 한 후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도록 안내

✔ 학군 내로 거주지 이전 시에만 선배치 가능

3

통합교육 및 순회교육지원

3-1 통합교육 지원

운영 방침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분위기 조성
- ✔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학교현장의 통합교육 활성화
- ✔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추진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시기
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강화	일반학교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연수 중 특수교육 관련 전달 연수 ○ 일반학교 교(원)장 특수교육 관련 집합(원격)연수 안내(연 3시간 이상 이수) 	연중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강화	통합학급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매년 15시간 이상 권장 (10년 합산 60시간 이상 이수, 누적 인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 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4,9월
찾아가는 장애공감교육	특수교육 대상학생 소속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장애공감교육 - 신청교 통합학급 단위로 1차시씩 2학급 지원 -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환류 	9~11월
장애인식 개선교육 안내 및 홍보	관내 모든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 안내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인력풀 및 콘텐츠안내 	3월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행동중재 거점센터(익산) 연계 - 장애학생 행동중재 연수 및 연구회 - 개별학생 지원 행동중재 컨설팅 프로그램 	연중

3-2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운영 방침

- ✔ 지역 내 특수교육 전문 인력풀(담당 장학사, 경력 특수교사 및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이수 교사 등)을 활용한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 ※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지원단과 병행 운영하며 이를 위해 행동중재 전문가 및 행동중재 전문가과정 직무연수 이수자를 위원으로 위촉
- ✔ 통합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 제공
- ✔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와 특수학급 신설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작성 지원, 통합학급 대상 특수교육 관련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자료 지원, 행동중재 및 생활지도 지원, 기타 특수교육 관련 상담 등을 지원

추진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시기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협의회	통합교육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 통합교육지원단 역할 분담 및 방향 설정, 관내 학교 현황 파악 등을 위한 협의회 실시 	3~4월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급 미설치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중심으로 지원 실시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안내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신청 안내 - 통합학급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방법 및 교과재구성 방법 등 안내 	3월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신청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 컨설팅 및 상담 -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 및 상담 - 저경력 특수교사 지원 - 신증설 특수학급 관련 운영 지원 	연중

3-3 순회교육 운영

운영 방침

- ✔ 순회교육은 일반 학교(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통합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교육과정 내에 운영
- ✔ 순회교육은 학교(급)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학생의 장애 유형·정도·기후·이동 거리 등에 따라 수업 횟수 및 수업 시간 결정 (재택 순회교육 주2회 이상 방문교육 실시)
- ✔ 학생의 성별, 연령,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사를 배치
- ✔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담임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순회교육 계획 수립
- ✔ 순회교사는 특수교육 관련 자문과 상담 역할을 수행하여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순회교육 지원 대상 학생에게 특수교육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추진 내용

구분	대상	내용	비고
순회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순회교육 지원 계획 수립 ○ 순회교육 신청 안내(특수학급 미설치교) 	2월 4주
순회교육 신청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반드시 보호자 동의 작성) 	3월 1~2주
순회교육 지원 대상학생 선정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신청 학생 면담 및 진단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순회교육지원대상학생 선정 	3월 3주 3월 4주
순회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지원 대상(선정 결과) 알림 ○ 순회교육 실시 - 학기별 순회교육 계획 작성, 학교 송부 - 순회교육 실시 - 학기별 평가 실시, 학교 송부 	3월 5주 ~

4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 활동 지원

4-1 진로직업교육

운영 방침

-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진로발달단계(초·중·고)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 ✔ 직업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생 진로 역량의 체계적 관리
- ✔ 지역사회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 ✔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에 따른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추진 내용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시기
진로·직업 프로그램	초·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내 일!(My Job!)” 운영 - 내용: 제과제빵, 목공, 도예 등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거점학교 - 운영방법에 따라 회기별 2시간씩 6~8회 실시 예정 	3~12월
진로·직업 현장체험학습	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탐방 1일 체험학습 - 대상: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중 신청교 - 장소: 미정(수요 반영) - 내용: 진로·직업 탐색 및 현장 탐방 	5~6월 예정

4-2 특수교육 교수·활동 지원

운영 방침

- ✔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 ✔ 미래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현장체험활동 등 학생의 특기·적성 신장 및 미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중심으로 운영
- ✔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센터 내 진로직업 교육실 및 에듀테크 교육실을 적극 활용
- ✔ 특수교육대상학생 미래교육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에듀테크 활용 기기 구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급별 미래교육 환경 이용 및 대여 안내
-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요와 발달을 고려한 경험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기회 제공
 - 프로그램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지도 강사 채용

추진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시기
미래 교육	에듀테크 기기 확충	○ 에듀테크 활용 기기 확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 대여용 기기 등)	4~5월
	완주 특수학급 스마트e챌린지	○ 완주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 내용: 에듀테크 기반 체험 및 e-스포츠 대회 참가 등 - 참여 종목 및 방법 추후 공문 안내	6월
	미래 교육	○ 에듀테크 활용 교육 -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 내용: 코딩, AI, 메이커교육, 키오스크 활용, 일상생활 및 직업교육 등 미래 교육 관련 프로그램	4~12월

구분		대상	내용	시기
미래 교육	미래교육 환경 이용	유·초·중·고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 실감형 콘텐츠 및 키오스크 체험 교육 - 학급별 신청을 통한 자유 이용 - 스마트팜 기기 대여	4~12월
교육 과정 지원	특수학급 교육과정지원 프로그램	유·초등 특수학급	○ 특수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내용: 음악, 미술, 현장체험학습 등 - 장소: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급 등	4~12월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문화예술 활동	초·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	○ 장애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 기간: 상/하반기 학기별 운영 - 내용: 도예(30회기 예정) - 대상: 신청 학생 중 최대 6명 예정 ※ 신청 학생 초과 시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	4~7월, 9~12월
	체육활동	초·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	○ 장애학생 체육 동아리 운영 - 기간: 체육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 - 내용: 수영, 테니스 각 30회기 - 대상: 신청 학생 중 최대 수영 16명, 테니스 16명 예정 ※ 신청 학생 초과 시 선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	연중

운영 방침

- ✔ 관내 유·초·중·고 특수교사, 통합교육 교사, 특수교육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
- ✔ 제6차 전북특수교육 5개년 계획 등 최근 교육 동향 반영
- ✔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 운영
- ✔ 연수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협의회를 통하여 연수 계획 반영

추진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시기
특수교육 역량 강화	특수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향상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에듀테크 활용 등 ○ 특수교사 심리적 소진 예방 및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 완주 특수교육 운영 협의회 실시(12월) 	5-7월, 10-12월
전문적 학습공동체 (동아리-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활용을 위해 학교급별(유,초,중등) 운영 - 교사 협의회를 통해 방향 및 주제 선정 ※ 2024년 전라북도교육청 10대 핵심정책 참고 (미래교육/수업혁신/기초학력/문예체교육 강화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내 운영비 지원 	연중
통합교육 역량 강화	통합교육 담당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지원 연수 - 내용: 장애학생 인권,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 장애특성별 행동중재 및 교수학습 방법 등 - 현장 적용을 위해 학교급별 운영 노력 	4월 9월
장애학생 활동지원	신규 사회복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사전 연수 실시 - 배치 당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이해, 지원인력역할 교육(2시간) 실시 - 신규 배치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실시(공문 안내) 	연중

운영 방침

- ✔ 학년 초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더봄학생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현황 파악
-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을 통해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
- ✔ 장애학생 자기보호능력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성교육 등 학생 교육지원
- ✔ 보호자, 교직원 등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자기결정권 연수 실시
-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활성화

추진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시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특수교사, 경찰, 성교육전문가 등 전문위원	○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 내·외부 전문위원(8명 이상)으로 구성, 지역 유관기관 협력으로 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3월
더봄학생 지원	관내 더봄학생	○ 더봄학생 현황 파악 및 관리 (인권침해 경험 및 위험 학생)	3월
		○ 더봄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연중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인권지원단	○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정기/수시) - 인권지원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 더봄학생 지원 방안, 현장지원 결과 공유 및 사안에 따른 대책 협의 ○ 인권지원단 홍보 강화	연중

구분	대상	내용	시기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관내 더봄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이상 정기 현장지원 실시 및 사안 발생 시 특별지원 실시 ○ 매월 국립특수교육원 및 도교육청으로 현장지원 결과 제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가해학생 보호 및 특별교육 제공 	연중
찾아가는 인권보호 교육 실시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보호교육 실시 - 학교별 3~4회기 실시 - 성교육, 인권·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연중
보호자 및 교원 연수	학교 교원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원(관리자 포함) 및 보호자 연수 - 연 1회 이상 실시 - 내용: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및 장애인권, 장애학생 성 자기결정권 지원 등 	미정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초4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조사방법: 온라인 및 대면조사 - 조사주기: 1년(23년 2학기~24년 1학기) - 인권침해 사안 및 대책 수립 지원 - 공문을 통해 추후 안내 	5~9월

운영 방침

-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협력체제 구축
 - 학부모 마을 교사 활성화(방과 후 마을 학교, 학부모 동아리 운영 등)
 -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제 구축
- ✔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가족지원 강화
-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들의 소통의 장 마련
 - 가족캠프를 통한 가족 참여 확대
- ✔ 학부모 자조모임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장애 자녀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생애 주기별 전환 계기 마련
- ✔ 현장의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반영

추진 내용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시기
가족 캠프 (예정)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가족	○ 가족캠프 운영 - 장소: 미정 - 대상: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 내용: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가족 간 편지 등 소통의 시간	10월
학부모 동아리	특수교육 대상학생 학부모	○ 학부모 동아리 - 기간: 상/하반기 학기별 운영(10회기씩) - 대상: 신청 학부모 (초과 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내용: 미정	4~6월 9~11월

8-1 치료지원

운영 방침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적응 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서비스 제공
-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의 질 향상 및 만족도 향상

추진 내용

구분	내용	시기
치료지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 치료지원 신청 서식 제출 - 신규 및 기존 이용 학생 모두 제출 필수 	2월 중
치료지원 모니터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치료실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을 위한 치료지원 모니터링팀 조직 - 관내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등 	3월
치료지원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지원 제공 내용 전반 모니터링 실시 - 대상: 관내 모든 치료지원 제공 유관기관 - 회수: 1회 이상 실시 - 점검 내용: 치료지원 제공기관 기본 요건 및 학교 및 보호자 관련서류 제공 현황, 치료지원 내용 상담 현황 등 ○ 치료실 모니터링에 따른 결과 보고 	6월 ~9월
치료지원 변경 및 꿈활짝카드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 휴학, 중지 등 치료지원 관련 사항 변경 사항 발생 시 교육청으로 공문 제출 ○ 재발급 필요시 공문을 통한 재발급 신청 	연중

8-2 방과후학교, 통학비, 의무교육비 지원

운영 방침

- ✔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서비스 지원 계획에 따라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지원 (유예, 어린이집 재원학생은 제외)
- ✔ 세부 내용은 계획 및 신청 공문을 통해 자세히 안내

추진 내용

구분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당 1개 프로그램 운영(최소 4명 이상, 유치원 3명 이상) ※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 유치원 제외 - 지원액: 프로그램당 월 60만원 지원 ○ 교내 일반·외부 방과후프로그램(관인등록된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반드시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에서 참여 (단, 영리기관은 음악, 미술, 체육에 한함) ※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유아학비(누리과정) 방과후과정비와 중복지원 불가
통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준: 버스 1구간 또는 1km 이상 ○ 대중교통 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버스, 자가용, 놓여촌 택시 등)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는 제외 ○ 1일 지급 횟수: 2회(등하교 중 1회만 발생 시 실제 발생 비용 지급) ○ 1일 지급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외 버스비 기준, 학교통학버스는 학교 통학버스비로 계산 - 자가용 이용시 유류비 실비로 계산(km당 200원) 1일 최대 2회 지원 ※ 자가용 이용 시 차량 기준 지급(학생, 보호자 별도 지급 안됨)
의무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유아학비 등 지원을 통한 지원방식 일원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희망여부에 따라 차액분 지원 - 무상교육 희망 유치원: 유아학비(교육과정+방과후과정) + 무상교육비 - 무상교육 미희망 유치원: 유아학비(교육과정+방과후과정) + 의무교육비 차액분

8-3 보조공학기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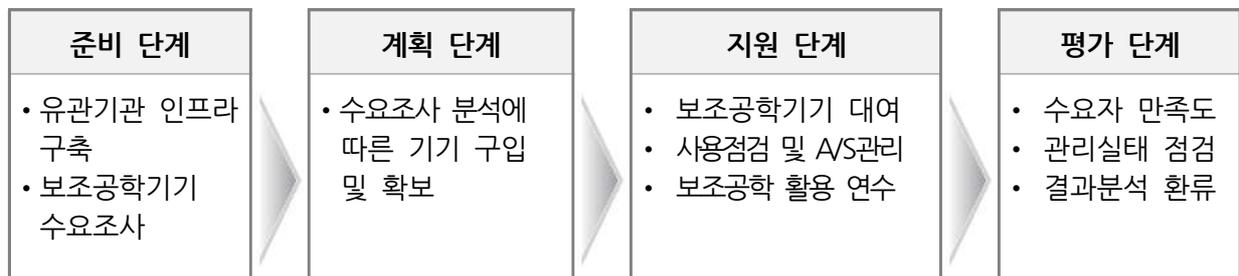
운영 방침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구축
- ✔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 강화
 - 보조공학기기 및 교수학습기기 대여 시스템 운영
- ✔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 철저
- ✔ 장애유형별 거점센터를 통한 보조공학기기 대여/지원 시스템 구축

센터명	설치 장소	비고
청각장애특성화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청각장애
지체장애특성화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지체장애
시각장애특성화센터	전북맹아학교	시각장애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전주대학교 내	감각, 이동, 일상생활, AAC, 자세보조, 컴퓨터 접근 기기등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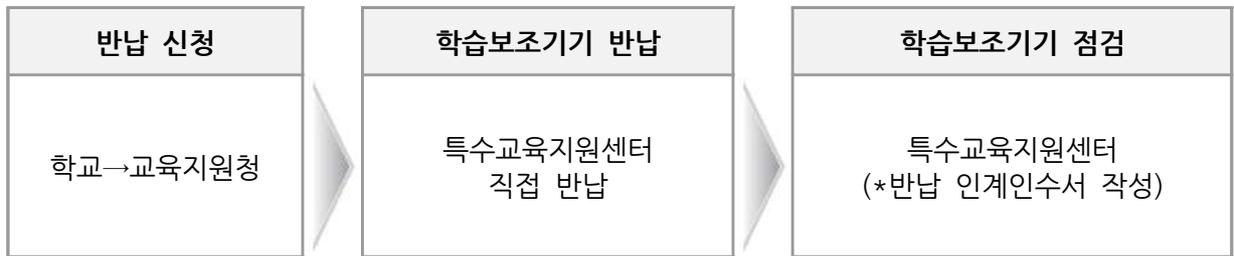
✔ 지원 절차



☑ 대여 절차



☑ 반납 절차



지원 및 협조사항

☑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의 대여/반납 절차 준수

- 대여 기간: 최대 1년
- 대여 기간 만료 후 학년 말 반납이 원칙
(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대여 연장신청서 제출 가능)

운영 방침

-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상담 및 전환교육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자
- ✔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진학 지원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
- ✔ 장애인식개선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활동 홍보를 위한 sns활동

추진 내용

-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관공서, 의료기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적극 홍보
- 생애주기별 장애 특성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진학상담, 진학설명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적절한 배치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영아 대상 전화교육은 보호자 연수, 입학설명회, 유치원 방문 지원 등 IFSP와 연계하여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적응을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전년도 말 ~ 2월까지)
- 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진로직업과 연계한 전환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활용하여 수시 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지원 및 협조사항

- 관내 학급 및 학교의 협력으로 유치원 및 학교 방문형 전환교육 확대

VI. 부록



[기준일 2024.3.1.예정]

가. 유치원 특수학급

순	유치원명	학급수 (특수 교사수)	학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전화번호 (교무실/특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1	봉동유치원	2	7	2	2 (1)	261-2206 070-4454-8416 070-4454-0901
2	봉서유치원	1	2			262-6225
3	삼봉유치원	1	4		1	262-2115
4	삼례초병설유치원	1	2			291-2538
5	삼례중앙초 병설유치원	1	2			291-2599

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순	학교명	학급수 (특수 교사수)	학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전화번호 (교무실/특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1	가천초등학교	1	2			262-9175 070-5153-9039
2	간중초등학교	1	3	2	1	243-7012 070-7841-0311
3	고산초등학교	1	1	1		263-4025 070-8898-0572
4	구이초등학교	1	6	1		222-0025 070-4496-8047
5	남관초등학교	1	2			231-6468 070-7853-8375
6	봉동초등학교	1	5	5		261-3240 070-4323-5229

순	학교명	학급수 (특수 교사수)	학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전화번호 (교무실/특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7	봉서초등학교	1	4	2	(2)	262-5335 070-4010-2788
8	삼례초등학교	1	4	1		291-2031 291-6161
9	삼례동초등학교	1	6	2	1	261-1470 070-4713-4248
10	삼례중앙초등학교	2	8		1	291-2599
11	삼우초등학교	1	3	1	(1)	263-8897 070-4713-4289
12	상관초등학교	1	4			282-5008
13	소양초등학교	1	1			256-4860
14	소양서초등학교	1	4			243-8743 070-7842-7693
15	송광초등학교	1			(1)	244-8111 070-7862-8787
16	용봉초등학교	1	2	1		244-3023 070-7858-8009
17	이서초등학교	1	2	1		222-8515 070-7004-9945
18	이성초등학교	1	2	1	1	221-8123
19	청명초등학교	1	3	1	1	221-8928 070-7825-1417
20	청완초등학교	1	3			261-5618
21	태봉초등학교	1	4		1	221-0075 070-7837-1553
22	화산초등학교	1	1			263-5265

다. 중학교 특수학급

순	학교명	학급수 (특수 교사수)	학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전화번호 (교무실/특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1	고산중학교	1	1	2		262-4024
2	구이중학교	1	3			221-8994 279-0254
3	삼례중학교	1	5		1 (1)	291-2624 070-4088-8544
4	상관중학교	1	3			278-9892 070-4876-4524
5	소양중학교	1	4		(1)	243-8650
6	용진중학교	1	2			260-7613
7	완주중학교	2	9	1		261-3033 070-5175-1155 070-4060-7021
8	화산중학교	1	1			263-5009

라. 고등학교 특수학급

순	학교명	학급수 (특수 교사수)	학생수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전화번호 (교무실/특수학급)
			특수학급	일반학급		
1	고산고등학교	1	8		1	262-4370 070-4716-2580
2	전북하이텍 고등학교	1	3			291-3066 070-4889-1715
3	한별고등학교	1	3			291-2738 070-7882-1012
4	완주고등학교	2	10	2	1 (1)	261-2620

2

2024학년도 완주특수교육 추진 일정

추진업무		3월	4월	5월	6월	7월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진단평가	신청기간	1차 진단평가	신청 기간	2차 진단평가	신청기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1차 특운위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		2차 특운위 (선정배치)		3차 특운위 (선정배치)
교수 학습 활동지원	교육과정지원	신청	찾아가는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			
	미래교육				장애학생 e-페스티벌	
	문화예술체육	신청	상반기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진로직업교육	신청	상반기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현장체험			유·초등 현장체험학습		
통합교육 지원	장애공감교육	신청		찾아가는 장애공감교육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협의회/안내	통합교육 컨설팅 지원 (요청)		
	순회교육	신청 및 대상 선정	1학기 순회교육 실시 (3월~7월)			
특수교육 연수 지원	통합교육 역량강화		1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특수교육 역량강화			1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2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유 / 초 / 중등 특수교사				
지원체제 구축	가족지원	신청	상반기 학부모 동아리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대여(연중)				
	장애학생 인권지원	인권지원단 구성	상반기 협의회	더봄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 (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상담 및 홍보		연중 상담 및 홍보 실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1·2월
3차 진단·평가		신청 기간	4차 진단·평가		
	4차 특운위 (선정·배치, 진학)			5차 특운위 (지원인력배치) 6차 특운위 (선정·배치, 진학)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하반기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신청	하반기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중등 진로직업 현장체험학습				
	찾아가는 장애공감 프로그램				
	통합교육 컨설팅 지원 (요청)				
	2학기 순회교육 실시 (8월~ '25.2 월)				
	2차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3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4차 특수교육 역량강화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동아리) 운영 지원				
신청	하반기 학부모 동아리			가족캠프 (별도 계획)	
	보조공학기기 대여(연중)				
하반기 협의회	더봄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지원 (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연중 상담 및 홍보 실시				

2024 완주특수교육 운영계획

발행처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jbwje.kr/
주소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5
전화	(063) 270-7606
F A X	(063) 270-7638
